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9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정혜경 · 윤종오 · 전종덕

최혁진 · 손 술 · 김준형

용혜인 · 허성무 · 한창민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임의성, 활동 시간 미보장, 권한과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공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1항).
- 나.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 다. 근로자·노동조합·사업주단체·전문단체 추천을 통해 사업장별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협의회 구성 및 교육·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 라.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

록 하며, 도급사업주가 결과를 검토·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주지하도록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공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제7항·제9항).

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강화함(안 제36조제8항, 제170조 및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 및 그 외 조치기준 마련과 사업주 지도 및 감독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참여 및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사업주 의사,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사업장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숫자와 유해성·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최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본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라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대피 권고
 - 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나.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의 노출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폭염,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참여
 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7.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8.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지도
 9.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10.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⑥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절차

와 제7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종사자(수급사업주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종사자는 이 법의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 전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
2.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3.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⑧ 사업주는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위험성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명백하게 유해·위
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단계에서 누
락한 경우
2.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사고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
준으로 낮게 결정되어 있는 등 위험성 결정이 잘못된 경우
3.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4.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특별
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발생시킨 유해
·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6.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

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결과 및 주요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과 그 감소대책, 감소대책의 이행 결과 등에 대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

⑩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전의 제4호) 중 “제65조제1항”을 “제23조제6항, 제36조제1항·제2항·제5항,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23조제5항,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6조제8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3의2. 제36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 ----- -----.
9. (생 략) ②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 여 및 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 및 그 외 조치기준 마련과 사 업주 지도 및 감독</u>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 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 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 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 ----- ----- ----- ----- ----- ----- ----- ----- ----- -----

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참여 및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사업주 의사,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사업장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숫자와 유해성·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최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본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라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

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
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대피 권고

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
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
· 위험 요인의 노출로 근
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
려가 있는 경우

다. 폭염,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
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
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참여

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
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로

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7.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
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
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신건강진단 실시 요청

8.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지도

9.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10.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
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
와 지원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
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
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니 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절차와 제7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종사자(수급사업주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종사자는 이 법의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 전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

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

2.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3.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⑧ 사업주는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위험성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명백하게 유해·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단계에서 누락한 경우
2.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사고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결정되어 있는 등 위험성 결정이 잘못된 경우
3.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4.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6.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결과 및 주요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과 그 감소대책, 감소대책의 이행 결과 등에 대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

⑩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0조(벌칙) -----

-----.

2. ~ 4. (중전의 제1호부터 제

4. <u>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제85조제2항 · 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u> 5. ~ 8.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u>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 제5항 · 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u>	4호까지와 같음) 1. <u>제23조제6항, 제36조제1항 · 제2항 · 제5항, 제65조제1항--</u> ----- ----- ----- 5. ~ 8.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6조제8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3조제5항, 제41조제2항--</u> ----- ----- ----- -----
---	--

· 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 · 제3항 · 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u><신 설></u> 4. ~ 8. (생략) ⑤ ~ ⑦ (생략)	----- ----- ----- ----- ----- ----- ----- ----- ----- 3의2. 제36조제8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